##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831

발의연월일: 2022. 12. 9.

발 의 자:한무경·권명호·권성동

김영선 · 김형동 · 노용호

양금희 · 엄태영 · 이채익

임이자 · 홍문표 의원

(11일)

### 제안이유

기업은 제품 출시 후 디자인을 일부 개량 또는 변형하여 후속 제품을 개발·판매하고 있으나,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디자인등록을 통한 후속 디자인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관련디자인등록출원 기간을 3년 이내로 확대하여 기업의 디자인 경영을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창작자는 아니지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게 된 경우에도 공동출원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심사관에 의한 직권보정이 출원인이 의도하지 않은 권리범위 변동 및 축소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권보정 무효 간주 규정을 도입함.

## 주요내용

- 가.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기간을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 원일부터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고 관련디자인의 등록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35조).
- 나. 공동창작자는 아니지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게 된 승계인도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39조).
- 다. 직권보정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에 대한 무효 간주 규정을 신설함(안 제66조제6 항).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1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관련디자인을 설정등록할 때에 기본디자인이 설정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등록 출원이 있는 경우에 이들 디자인 사이에는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 중 "제3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디자인등록"으로 한다. 제62조제3항제6호 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직권보정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6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직권보정이 제48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

던 것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관련디자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4항 및 제6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이미 경과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공동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 제4조(직권보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사관이 한 직권보정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관련디자인) ① 디자인권	제35조(관련디자인) ①
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	
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	
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	
자인"이라 한다)과만 유사한 디	
자인(이하 "관련디자인"이라 한	
다)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	
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u>1년</u>	<u>3년</u>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	
에 한하여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	
구하고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단서 신	<u>다만, 해당</u>
<u>설&gt;</u>	관련디자인을 설정등록할 때에
	기본디자인이 설정등록되어 있
	지 아니하거나 기본디자인의 디
	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
	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④ 제1항에 따라 기본디자인과
	만 유사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
	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 이들
	디자인 사이에는 제33조제1항

제39조(공동출원)	제3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	을 받을 수 있
는 권리가 공유역	인 경우에는 공
유자 모두가 공동	으로 디자인등
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①・

- ② (생략)
- ③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 록출원으로서 제35조에 따른 관 련디자인등록출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 1. ~ 5. (생략)
- 6.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 원일부터 <u>1년</u>이 지난 후에 디 자인등록출원된 경우
- 7. (생략)
- ④·⑤ (생 략)
- 제66조(직권보정) ① 심사관은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도면에 적힌 사항이 명백

<u>각 호 및 제46조제1항·제2항의</u>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공동출원) <u>디자인등록</u>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1. ~ 5. (현행과 같음)
6
<u>3년</u>
7.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66조(직권보정) ①

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한 다)을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⑤ (생 략) <신 설>

-----. 이 경우 직권 보정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범 위에서 하여야 한다.

- ② ~ ⑤ (현행과 같음)
- ⑥ 직권보정이 제48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 정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 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